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원(이사) 공개모집 공고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 직위 및 직무

직위	모집인원	직무내용	근무형태
이사	2명	1. 이사회 출석 및 서비스원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3. 지역사회 복지분야 공익사업 확대	비상근 (무보수)

2 자격요건

직위	자 격 요 건
이사	• **다음에서 정한 요건 중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3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2024. 3. 13.(수) ~ 3. 28.(목) / 초일 제외 15일**
- **접수기간: 2024. 3. 22.(금) ~ 3. 28.(목) 18:00 / 5일(토·일요일 제외)**
- **원서교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고의 첨부된 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방문/우편/이메일(recruit@dj.pass.or.kr) 중 택 1**

※ 방문 제출 시 근무 시간 내 접수(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봉투 표지에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원 지원서류' 기재
※ 이메일 접수 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 접수기간 마감 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를 접수마감 전 전화로 확인 요망

- **접 수 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부((우34917)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46, 대림빌딩 10층)**

5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6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내 용
서류전형	- 심사방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직무수행요건, 자격요건 등 서면심사 - 결과발표: 2024. 4. 10.(수) 예정 /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서류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 ※ 접수결과 응시자 수가 모집인원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면접 미실시

7 유의사항

1) 본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합니다.
3) 접수여부 미확인,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 결과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5)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이 경우 기존 응시자는 재공공 응시자로 포함)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명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6)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 기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진행하며, 모든 응시자는 진위여부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청탁을 금하며, 모집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 등의 조치를 합니다.
8) 기타 사항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부(042-331-89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